"모방상표"의 등록, 더 이상 안된다!

'2006년 말 목표로, 상표법 개정 추진

○ ▶ 으로는 더 이상 타인의 상표를 그대 Ⅲ 로 베낀 모방상표의 등록이 쉽게 되 지 않을 전망이다.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 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독특하 게 구성된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모방한 상 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.

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, 종전에는 국 내 또는 외국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표 의 경우에는 아래 〈참고자료〉 에서 보는 것 처럼, 타인의 독특한 상표를 그대로 모방 한 상표도 선출원주의 및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되고, 또 제3자가 해당 상표를 등 록받은 경우에는 원래 그 상표를 먼저 사용 한 사람(선사용자)도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다.

그리고 이런 결과로 인하여 정당한 상표 사용자의 신용, 명성이나 이익이 크게 훼 손되거나 일반수요자들이 해당 상품이 어 느 회사의 것인가(즉 상품의 출처)에 대하 여 오인 · 혼동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와 이 러한 모방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받 은 다음 정당한 상표사용자에게 고가로 되 파는 등의 사회적 폐단이 존재하였다.

특허청에 따르면, 이번 상표법 개정은 모방상표의 등록으로 인한 이와같은 사회 적 문제 내지 폐단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. 즉, 모방대상 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(즉 주 지ㆍ저명상표)가 아니고, "어느 정도 알려 진 상표" 인 경우에도 이를 모방한 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, 모방상표의 등록을 철저 히 차단하고, 또 설령 모방상표가 등록되 더라도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(선사용 자)는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, 모 방상표의 등록에 따른 기대이익을 대폭 축 소함으로써, 엄격한 선출원주의 및 속지주 의 운영에 따른 속칭 상표브로커 등의 상표 제도 악용현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.

이러한 모방상표의 등록차단을 위한 상 표법의 개정추진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 표의 중요성 및 상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가 날로 강조되고, 해외여행 일상화 · 시장 개방의 자유화 · 인터넷 이용인구의 급증 을 통한 정보 공유의 동시화 등을 통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거래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서, 매우 시의적절한 방안으로 생각된다.

한편, 모방상표의 등록차단을 위한 상표 법 개정내용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모 방상표의 등록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 로 기대된다. 이렇게 되면,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은 물론, 국제교역규모나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이미 선진국의 위치를 점 하고 있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 및 국가브랜



특허심판, 언제 종결될지 쉽게 알 수 있어

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대상을 모든 당사자계 사건으로 확대

허심판원은 앞으로 모든 당사자계 심판사건에 대해 심리종결 예정시 기를 통지함으로써, 특허심판을 청구한 당 사자가 자신의 사건이 언제 종결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.

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는 당사자들에 게 심판사건이 언제 종결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고 의견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 도록 하는 제도인데, 지금까지는 심판청구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건에 대해서 만 통지하였다.

이로 인해, 심판청구일부터 6개월이 경 과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할 우려가 있었고, 2006년 말에는 대부

분의 당사자계 심판사건이 6개월 내에 종 결될 예정이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특허심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모든 당사자계 심판사건에 대해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하고, 우선심판 결정서에도 미리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병 기하여 통지함으로써 당사자가 심판사건 의 처리일정을 알기 쉽게 할 예정이다.

이와 같이 심판원이 모든 당사자계 심판 사건에 대해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하 게 되면, 당사자들은 사건의 종결 시점을 더욱 쉽게 예측할 수 있고, 사건이 종결되 기 전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.

드의 가치를 제고시킬 것으로 본다. 또한 모방상표를 근절하고 고유 브랜드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특허청의 상표심사 및 심판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.

그런데 이번 상표법 개정에는 그 외에도 기술과 산업발달로 홀로그램상표, 동작상 표 등의 새로운 상표가 거래사회에서 널리 사용됨에 따라 상표법상 보호되는 권리보 호 대상을 확대하고, 상표이의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출원변경제도의 인정범위

확대 등 국민의 편의가 제고되도록 상표제 도를 개선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 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.

이번 상표법 개정 내용은 2006년중 개정 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, 곧 관계부처 의견문의를 거쳐 입법예고할 예 정으로 있다.

제공 특허청